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유용원·조승환·이종배

박준태 • 임종득 • 주진우

김은혜・임이자・김 건

신동욱 • 서천호 • 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 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 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 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 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 람

제9조 중 "파목까지"를 "파목까지 및 거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타목 및 파목"을 "타목, 파목 및 거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중 "파목"을 "파목·거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장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하여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①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	,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	1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u><신 설></u>	거.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제
	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
	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	
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u>파목까</u>	<u>파목까</u>

<u>기</u> 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
로구	구정하되,	세부	적인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	다.	

-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제1항제1호차목, <u>타목</u>
 및 <u>파목</u>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2. ~ 6.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생략)

<u>지 및 거목</u>	
	 로,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 목·<u>파목</u>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 람

나. (생 략)

- 3. (생략)
- ③ ④ (생 략)

2
가
<u>파목·거목</u>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